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서술형 281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9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돌봄)



20대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하느라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26년 8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인 “위기아동·청년”에는 34세 이하의 ① 가족돌봄 아동·청년, ② 고립·은둔 아동·청년, ③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그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 제1항제1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참조 및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장애인, 6개월 이상 돌봄 필요 질병 또는 중증수술 환자 등)
-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는 예외)
-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다만, 등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 공동유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실질적 돌봄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
-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해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 및 연계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에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법령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지원
-----------------	-----------	---

신청 방법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해당지역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 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돌봄)

Q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10일 정도 회사를 쉬고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회사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참조).

휴가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 ☑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간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및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 ☑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제한 사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본문).

-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8호).

가족 간병(돌봄)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퇴원 후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보다는 고향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뜻을 존중해 드리고 싶지만 어머니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모두 걱정되는데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로,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로,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노인 참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방문진료	보건소방문관리	방문간호	긴급돌봄지원
왕진버스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방문요양	독거노인응급안전
정신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방문목욕	중간집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지원	(복약지도)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노인맞춤돌봄
치매발견·기본관리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장기요양 재택의료	(스마트홈 돌봄)
치매전문관리		(통합재가)	
만성질환관리		(방문영양)	
(통합재택간호)		(방문재활)	
(임종케어)		(병원동행)	

※26년 8월 기준, 괄호 밖 글자: 현재 제공서비스
괄호 안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돌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및 제23조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명에 대해서는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가-2 및 제23조제4항·제5항 전단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가-3 및 제23조제6항 참조).

-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⑫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 간병(돌봄)



배우자가 수술로 입원할 예정인데, 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에도 부담이 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1항 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은 간병비 부담의 경감, 전문 간호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및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의 생활안정 등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9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 ✔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제공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본문).

☑ 다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1항).

키워드 가족간병,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통합돌봄, 지역돌봄, 퇴원환자 지원,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방문진료,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통합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인

